

2021년 북상면 종합감사 결과보고

I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21. 5. 10. ~ 5. 13. / 4일간
- 감사범위 : 2018. 4. 28. ~ 감사일 현재
- 감사인원 : 감사담당주사 등 6명

II 감사결과

1] 예산회계분야

1) 신용카드 발급, 보관·관리 소홀

- 감사범위 기간 동안에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·비치하지 않고 있었으며, 관리공무원이 교체 되었음에도 지방자치구매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상호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아 카드 비밀번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하였음.

2) 지출 및 지급 규정 미준수

- 감사범위 기간 동안에 19건, **,***천원을 지출하면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 없이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각 단체명의로의 대표채주 계좌로 지급하여 지출 및 지급 규정을 미준수 하였음.

3) 건설업 면허 적용 부적정

- 「○○○○ 농로 개량공사」 등 3건을 시행하면서 주공종과 다르게 등록된 업체와 계약·시행 하였으며, 「**마을 배수로 정비공사」

등 5건을 시행하면서 주공종이 전문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종합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·시행하여 건설업 면허 적용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.

4) 현금영수증 사용절차 미준수

- 감사범위 기간 동안에 37건, **,***천원의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,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고(결재)하지 않았음.

2] 건설분야

1) 건설공사 폐기물처리 확인 소홀

- 「□□ □□□ 용배수로 정비공사」 등 14건에 대하여 준공 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, 중량계근포 등 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 여부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준공서류 보완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, 「△△ △△ 용배수로 정비공사」 등 2건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2) 건설공사 산업안전관리비 미반영

- 총공사비가 4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인 「◇◇ ◇◇◇◇ ◇◇ 아스콘 포장공사」 등 11건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설계서 원가계산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원가계산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.

3)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업무 소홀

-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(공제)가입 여부 및 정기검사

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표준계약서 기재사항 및 확인사항을 누락한 채로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건설기계 관계 법령에 의한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임대한 장비가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 시 보험 미가입 등으로 책임한계에 따른 분쟁 발생시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.

4)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사전승인 소홀

- 「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정비공사」 등 38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『건설산업기본법』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배치되는 건설기술인(현장대리인)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3] 세무분야

1) 상속개시에 따른 취득세 과세 누락

- 취득세는 신고·납부방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세목이나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제척기간 내 과세 예고통지를 하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,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해 그 신고기한이 경과되었으나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(종세포함) *,***천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.

2)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 소홀

- 재산세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대상토지, 별도합산대상토지 및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매년 그 이용현황을 조사하는 계획을 세워 부당하게 세원이 누락되는 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,

- 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전년 과세대장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저율 분리과세 되도록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3) 지방세 체납관리 소홀

- 본청에서 시달된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에 따른 면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며,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내 체납자에 대한 관리담당자 미지정, 실태조사에 따른 체납자 관리카드 미작성 등 체납사유나 징수전망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,
- 요건을 충족하는 행정제재 조사대상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대상자를 파악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상급부서에 대상자를 제출하여 제재를 요청하지 않은 점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4] 복지분야

1)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

- 기초생활보장 의사무능력(미약)자 급여관리를 반기별로 점검하여 필요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거나,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·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수리,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박용달 등 3세대에 대해 급여관리자 지정을 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의사무능력(미약)자의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2)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업무 소홀

-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안전교육을 포함한 활동교육을 4시간 실시하고 이후 필요한 추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3)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

- ●●경로당은 **,***원을 중산경로당 운영비로 용도 외 지출하였으며, ▲▲경로당 등 16개 경로당의 운영비 보조금 정산시 지출증빙서류가 미흡하게 제출되었으나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4)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미흡

- 사례관리 종결자 정순이 등 3명에 대해 사례관리 종결 후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거나 미실시하여 통합사례관리 가구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

5) 통합사례관리 절차 미준수

- ○○○ 가구의 사례관리종결 시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심사를 완료하여 통합사례관리 절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6)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부당서류 징구

- ○○○ 등 12명의 민원인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등 신청시 가족관계 확인 등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요청 및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이용하여 가족관계사실을 확인 할 수 있음에도 민원인이 유료로 발급받은

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사회보장급여 신청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.

5] 산업·주민분야

1) 직불금 승계처리 부적정

-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○○○ 등 6명의 사망자에 대한 승계 증빙 서류를 받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음.

2)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확인 소홀

- 전입신고가 있으면 관할 이장이 전입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확인 누락, 이장확인 누락, 담당공무원 확인이 누락되는 등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3) 습득 주민등록증 처리 소홀

- 습득 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분실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이미 분실 재발급을 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회수처리를 하여 분기별로 파기를 하여야 하는데 습득증을 회수처리 및 파기를 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보유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4)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처리 소홀

-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발급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발급 하였으며,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접수인을

날인하지 않고, 발급번호 표시를 누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6] 기타

1) 비밀문서 관리 소홀

- 비밀관리기록부를 관리하면서 예고문을 적색으로 기재하지 않았고, 파기 시 파기자 및 처리자에 날인을 하지 않았으며,
- *건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.

2) 이장 명부관리 소홀

- 『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』에 따라 이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거창군 행정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면장이 임명하고 명부 관리에 필요한 이력서를 10일 이내에 면장에게 제출 받아야 함에도,
- 신규로 이장을 임명하고 개발위원 추천서 및 이력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.

3)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

-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를 재산출 하지 않아 연가보상비가 부당지급 되었으며,
- 신규발령자에게 연가가산을 줄 수 없음에도 1일의 연가가산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.